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
안내서(제9판)」 개정 안내

1. 관련
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83조

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6835(2023.5.26.)

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9판)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, 유관 기관 및 부서에서는 본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개정사항

- **(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)**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'23.3.20. 시행)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

구분	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	
	<개정 전>	<개정 후>
내용	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	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

※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,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은 가능하나(사전 협의 필요),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

- **(기타 내용 정비)**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

나. 시행: 2023. 6. 1.(목), 0시부터 시행

※ 질병관리청 누리집(알림·자료 → 법령·지침·서식 → 지침)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
붙임 1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9판).
2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9판) FAQ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김윤정

행정사무관

최준하

학생건강정책 2023. 5. 26.
과장 정희권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3476 (2023. 5. 26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동) / <https://www.mo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6962 팩스번호 044-203-6598 / yo0n0415@korea.kr / 대국민 공개